

간호원의 위치에 대한 역사적고찰 : 교육부문

한 윤 복 교수

(가톨릭의대 간호학과 교학감)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모든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국민의 복지 향상이 없는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곳에서나 인간의 복지 향상과 인권옹호를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인력은 건강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간호교육 이념 정립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간호협회와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계속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해왔다. 지금까지의 진로 중심의 간호에서 건강중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할때 바람직한 변화가 올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일에 앞서 간호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위치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I. 기초교육제도 발전의 역사적 배경

1. 1945년 이전의 간호원 조산원 교육

1) 최초의 법적인 교육제도

관공립제통의 간호교육은 1899년 3월에 관립의학교에 관한 편제가 발표되고 경성의학교가 설립된 후 1907년 대한 의원에 치료부 교육부 위생부를 두고 교육부에서 의사, 약사, 간호원, 조산원의 교육을 담당했다.

선교계 간호교육은 법적제도가 마련되기 앞서 1903년에 간호원 Margaret Edmunds와 의사

Cutler에 의해 세워진 보구여관에서 시작 되었으며 다음으로 1906년 세브란스병원에 간호원 양성소가 Miss. E. Shields에 의해 설립되었다. 1913년 10월 조선총독부령 간호원, 조산원교육에 의한 14개 관공립 양성소는 실업학교 편제였다.

2. 1945년 이후의 간호교육제도

1) 고등간호학교와 간호고등기술학교

1946년 7월 고급실업중학체제에 따라 간호부 양성소가 고등간호학교로 개칭되고 수업년한은 3년으로 했다(보건 후생부 통칙)

1953년 교육법개정후 간호고등학교는 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칭되었다.

2) 간호학교—간호전문학교—간호전문대학

간호고등기술학교는 1965년 11월에 간호학교 규정이 문교부령 166호로 공포되어 소급대학 또는 전문학교 수준으로 높여 간호학교로 승격했으며 1970년에는 새로운 전문학교 체제를 갖춘 간호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 전문학교 졸업자를 위한 계속교육의 문은 열려 있었으나 실제로는 소수의 학생만이 대학 입학자격고시에 합격할수 있었다. 1979년부터는 간호전문학교가 간호전문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행정면의 자율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때부터 정규대학 편입학의 기회는 주어졌으나 1981년부터 대학의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되었다. 현재는 40개 전문대학과 15개 대학과정이 있다.

3) 학사과정

4년제 학사과정은 1955년 처음 이화여자대학

교에서 개설하여 15명의 첫 졸업생이 1959년에 배출되었고 연세대학에서는 1957년 학사과정이 개설되어 1958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1959년에는 국립서울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설치되었고 현재 15개의 대학 과정이 있다.

3. 간호교육 심의기관

1) 간호교육 심의 위원회

1964년 10월부터 한미재단의 재정적 후원을 얻어 간호교육 심의 위원회의 상설과 간호교육을 위한 직제 설치등 두가지 목표를 내걸고 대한간호협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1965년 1월부터 문교행정의 자문기관으로 과학교육 심의위원회 제 4분과 간호교육심의 위원회가 공식적인 발족을 보았다.

한편 1965년 2월부터 한미재단 원조로 문교부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과내에 간호교육 담당을 위한 전문직원을 두어 실무를 집행하였다.

2) 전문대학 평가위원회

문교부장관이 위촉한 간호전문대학 평가위원회에서 제도, 학사, 재정, 시설등 주요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 및 조정을 하고 있다.

3) 대학교육 협의회—대학 과정인 경우

현재까지는 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의학교육협의회에 의해 학사평가를 받고 있다.

II. 계속교육과정

1.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첫번째 대학원 석사과정은 이화대학에 1960년에 개설되었고 현재 12개 대학에 석사과정이 개설되고 박사과정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각각 개설되었다.

2. 중앙간호 연구원(1년 과정)

중앙간호연구원은 1954년 대한간호협회 교육

위원회의 제정과 계획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간호사업과의 주관으로 개설되었다. 본 연구원의 교육목적은 시급히 요청되는 간호학교 교사와 보건 간호계의 지도자를 육성함에 있었다.

UNKRA와 한미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었으며 3회에 걸쳐 51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나 1957년 대학과정이 설치되면서 폐되었다.

3. 조산원과정

부산소재 일신부인병원에서는 최초로 1953년부터 조산과정을 마련하여 간호원, 조산원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교육받게 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처음에 6개월이었으나 9개월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지금은 조산원 수습지정 병원이 있어 1년 과정후 면허를 받게 되어 있다.

4. 연구과정

- 보건 간호과정(CPHN) : 1년과정
정부, WHO, UNICEF의 후원으로 1967년에 개설 되었다.
- 간호행정학—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1년과정

5. 분야별 전공과정

○ 의료법 시행규칙 54조 1항에 의거해서 보건간호원, 마취간호원, 정신간호원, 조산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교육법 시행령 제46조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6조(1967)에 의거해서 양호교사 자격을 주고 있다(교직과목이수)

○ 기타 :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과정을 주무부처에서 권장하고 있다.

6. 보건진료원

1980. 12. 31에 제정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2 항 3항에 의거하여 보사부와 한국인구보건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7. 기타 보수교육 과정

대한간호협회, 각지부사업, KNA 산하단체, 대한간호 제22권 제3호(7, 8월호) 통권 제121호 57

교육병원, 의학교육연수원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내지 제17조

Ⅲ. 법규 및 면허

1. 1945년 이전

간호법규가 1914년 10월 13일 단독법(간호원규칙 조선총독부령 제154호)으로 제정공포 되었다. 의료업자인 의사, 약제사, 약종상의 규칙은 1900년에 공포되었으나 여성의 직업으로는 최초로 사회제도상의 인정과 여성직업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후 1922년 5월 2일 조선 총독부령 제76호로 개정되었는데 제 8조에서는 업무규정이 제시되고 있다. 자격고시는 간호원 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있고 학술시험과 실기시험을 결합했다. 1920년 이후는 각도에서 간호원 조산원 시험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관리를 했다. 조산원 규칙은 1914년 7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108호로 공포되었으며 간호원 과정은 졸업한 정도에 한해서 조산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다.

1944년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료령」과 「조선의료령시행규칙」이라는 종합법을 제정했다.

이 의료령이 광복이후 국민의료법 및 시행세칙 제정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었다.

2. 1945년 이후

국민의료법이 1951년 통과되고 1962. 3, 1973. 2, 1975. 12. 31 개정되었는데 현행의료법 제 7조에 면허에 대한 규정이 있다.

1) 간호원의임무 : 의료법 제2조 2항 5호,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간호원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전문분야별 자격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1항

3) 양호교사를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6조

4) 보건진료원을 위한 “능어촌 보건진료를 위

58 대한간호 제22권 제3호(7, 8월호) 통권 제121호

Ⅳ. 간호교육 연구활동

1. 간호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기초조사연구가 1968년 홍신영, 이귀향, 이영복교수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해결되어야 할 주요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간호 교육수준이 낮다(1973년 이후에 전문학교 수준으로 승격되면서 해결되었다)

②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육방향 내지 교육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③ 3년제 출신의 간호원에게는 계속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개별 간호원들의 전문성 성장이 한정되어 있다.

④ 간호교육자의 부족

교수활동이 현대화되어져야하며 교수의 수준 높은 훈련이 요구된다.

⑤ 대학졸업 간호원을 위한 근무조건이 부적합하다.

⑥ 학생들의 학습경험이 적절하지 못하다.

2. 간호교육 이념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교육목적이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천명되고 인식되어야만 교과과정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교육평가에서 능력이나 특성을 뚜렷하게 타당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간호교육목적은 너무나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훌륭한 간호원” 또는 “유능한 간호원”을 육성한다는 막연하고도 근원적 형태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간호학을 체계화하고 간호의 개념을 조직화 하기 위해 간호원들이 활동하는 현실에서 의미를 줄 수 있는 간호의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가 각기관에서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회에서는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교육의 일반목표와 특수 목표를 분석 종합하여 간호교육의 이념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전국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간호학이 국제성을 띤 학문이라는 하지만 우

티가 활동하는 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그리고 시대적여건에서 벗어날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의 발전과 국제수준의 위치를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특성도 살리고 토착화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현대화라고 본다.

3. 간호전문대학 교육 체제의 개선 방안

1980년 3월 간호전문대학 교육연구 위원회는 문교부로부터 위촉받아 전국 간호전문 대학의 실태를 조사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분석종합하였고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① 간호인력의 필요는 건강관리제도의 채택, 건강권고, 국민의료제도 실시, 경제성장과 발전, 의식구조 변동에 따라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분화되고 전문화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전문대학은 교수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력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증원과 교육연한의 연장, 계속교육의 연결 및 문호개방 등 전문연수체제의 제도적 확립이 요청된다.

② 간호역할은 확대되고 내용이 변동되며 질적으로 분화, 전문화, 고도화 된다. 그러므로 간호전문대학의 교육내용은 과거의 광외의 의료개념에서 건강관리이념으로 옮겨 국민의 건강면과 연관되는 다목적인 이념에서 독자적 과정으로 발달시켜야 한다.

③ 간호교육 및 그 필요의 변동은 간호교육체제의 질적 향상과 보장 간호교육운영과정의 철저화와 정비간호인력판타의 질서체제 확립을 요청한다.

④ 현행 단과 간호전문대학은 교육행정측면에서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에 해결 또는 개선이 없이 교육발전은 기약되기 어렵고 교육행정의 다원성 및 복합적 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⑤ 현행 간호전문대학의 조직운영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행정직의 경직, 건강 실습병원의 교육적 활용등에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⑥ 현행 간호전문대학의 재정적 측면에서 단과로서의 학생 정원 규모와 운영과정의 경직성

등은 재고해야 한다.

⑦ 현행간호 전문대학 교과과정의 편성과 국가고시 과목과의 관계 및 운영실제면에서 개선이 강구되어야 한다.

⑧ 연수교육 기회와 확대와 계속교육 기회에 따라 면허 및 자격증 취득과정의 합리적인 처우가 요망된다.

⑨ 현행 간호전문대학의 시설 설치 기준은 단과로서의 성격을 고려 조정하여야 한다.

⑩ 간호인력의 취업은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소극적 접근을 탈피하고 의료필요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보해야 한다.

⑪ 간호역할은 의료구조에서 전문적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하는 자립의 위치를 확보시켜야 한다.

V. 간호교육과 外 援

① 1953년이래 UNKRA와 AKF에서는 간호학교의 재건과 발전을 위한 비품과 실습재료를 17개 학교에 기증했고 교재출판을 위한 기금을 세워서 해부생리학등 수련의 책을 출판하였다. 이 출판 기금은 대한간호협회에 기증되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② 1957~1960년 국립서울대학교에 대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원조계획의 일환으로 미네소타 대학교 간호대학에서 Mrs. Margery Low, Joan William, Florence Julian을 간호교문으로 파견한과 동시에 간호학과 교사와 간호원 기숙사의 건축을 협조하였다.

③ 1960~1982년에는 미국 Indiana 대학교와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와 한국정부와의 협정으로 Indiana 대학교 간호교문단이 내한 하였다.

④ 6.25동란이래 민간구호에 힘써오던 스칸디나비아 세나라는 사절단을 구성하고 한국정부와의 공동사업으로 10년간의 협정을 체결한후 국립중앙의료원을 선척하였고 실무교육 계속교육의 기초를 마련했다.

⑤ 신교 제릉에서는 계속자 방면으로 간호교

제 4 회 국제간호학술대회

육을 협조하고 있다.

연세간호학과와 완비된 기숙사와 교사 또는 대구동산 간호학교의 12층의 웅장한 건물과 시설들은 그 대표적이라 하겠고 그 외에도 전주, 광주, 개정등에서 간호교육을 후원하였다.

⑥ 오지리 부인회 회원은 가톨릭의대 간호학과, 여러 가톨릭 재단에서 각각 부산메리놀 간호전문대학, 북포콜롬반 전문대학등을 후원하였다.

⑦ 안식교에서도 계속 위생병원 간호학교를 육성하여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고 남자 간호원도 배출하고 있다.

Ⅵ. 전문직 간호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

- 나이팅게일 선서
- 한국간호원의 윤리강령, 대한간호협회 (1983)
- 국제간호도덕규약, 국제간호협의회 (1975)
- 간호원의 정의, 국제간호협의회 (1975)
- 계속교육에 관한선언, 국제간호협의회 (1975)
- 동일노동 동일 임금에 관한 결의, 국제간호협의회 (1975)
- 인류의 환경보호에 관한 간호원의 역할,

국제간호협의회 (1678)

- 재소자 및 억류자 관리에 관한 간호원의 역할, 국제간호협의회 (1975)
- 확대되는 간호원의 역할, 국제간호협의회 (1973)
- 조산원의 정의, 국제조산원연맹
- 적십자의 권리와 간호원의 의무, 국제적십자연맹 (1949)

참 고 문 헌

이영복 : 간호사, 수문사, 1968.
 의료법, 관계법령 : 대한간호협회출판부, 1982.
 하영수의 : 한국간호교육이념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회, 간호교육종합연구위원회 1976.
 한철우 : 간호관계법령 어떻게 달라졌나
 —의료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 제22권, 제2호, 1983, pp.6~13.
 홍신영 : 한국간호교육 행정의 발전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2.
 홍신영, 이귀향, 이영복 : 한국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문교부, 1969.
 홍영숙외 : 간호전문대학교육제도의 개선방안 문교부 간호전문대학 교육연구위원회, 1981.3.